

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3079호
- 나. 발 의 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출일자 : 2022년 01월 21일
- 라. 회부일자 : 2022년 01월 25일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으로 주민이 규칙을 대상으로 제정·개정·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, 조례로 위임된 규칙 제정·개정·폐지 의견제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.

3. 주요내용

- 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의견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함
(안 제23조~제30조까지 신설).
 - 의견제출 방법을 규정하고, 제출 제외대상을 명시함
(안 제23조~제25조까지).
 - 의견제출 검토 및 보완요구, 결과통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
(안 제26조, 제27조).
 - 의견 반영 등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8조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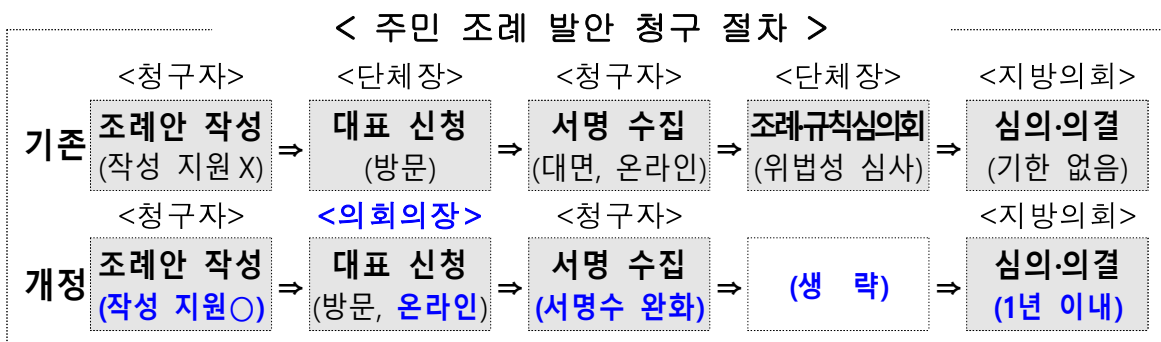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을 통해 규칙의 제정과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권이 신설됨에 따라 의견제출과 검토, 결과 통보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음.

나. 지방자치법 개정사항

-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 만에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‘법’)이 전부개정 되면서 주민 중심의 지방행정 구현과 지방정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.
- 특히 주민주권의 구현을 위한 직접참정제도가 신설되면서 주민 직접발안제도와 규칙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권이 도입되었음.
 - 법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사항을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(22.1.13. 시행)로 분리 제정하고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음.



-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된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에 대한 의견 제출권이 신설되고 세부적인 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음.1)
- 서울시는 이 중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권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안을 참고하여 별도의 제정안이 아닌 현행 조례에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개정하게 되었음.

다.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개정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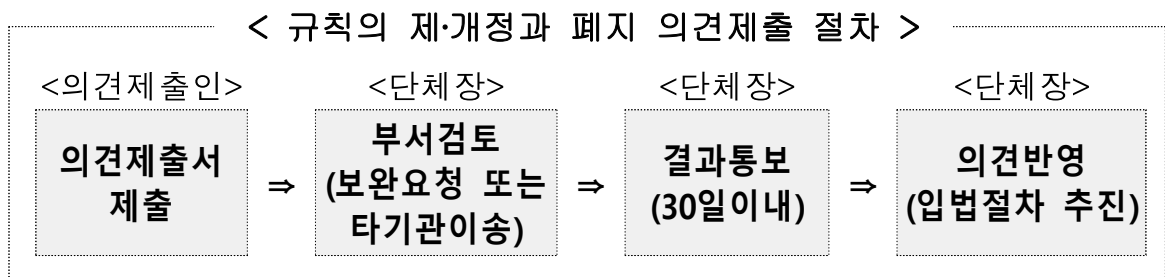
- 개정안은 법에서 위임한 주민의 규칙 제·개정과 폐지에 대한 의견 제출과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으로,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.

< 조문별 주요내용 >

조 항	조 제 목	주요내용
안 제23조	주민의 규칙 의견제출	의견제출 방법을 규정하고 제출 제외대상을 명시
안 제24조	의견제출 제외대상	
안 제25조	의견제출서 작성방법	제출서류 보완요구와 30일 내의 결과통보
안 제26조	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	
안 제27조	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통보	
안 제28조	의견의 반영	입법절차 추진
안 제29조	차별대우의 금지 등	의견제출에 대한 보호조치
안 제30조	비밀 준수의 의무 등	

- 1) 「지방자치법 제20조」(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)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(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)의 제정,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
-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,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안 제23조와 제25조는 주민이 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취지와 이유를 의견제출서에 명확히 하여 제출하고, 다수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견서에 표시하는 등 의견제출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24조는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▶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, ▶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, ▶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로 하였음.
- 안 제26조는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 제출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안 제27조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소속 위원회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제출인에게 검토 결과 등을 통보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28조는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칙의 제·개정과 폐지의 입법절차를 추진하여 주민의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음.



- 그동안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규칙에 대한 의견제출 근거 규정이 미비한 문제가 있었는데, 개정안을 통해 주민주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됨.
- 이와 함께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「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·시행(2022.1.13.)되면서 주민의 직접참여와 의회의 대표성·책임성을 환기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음.
- 다만, 제출 의견에 대해서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의회의 모니터링체계를 마련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입법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노 혜 미	02-2180-8057